

『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-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자문위원회 기능 중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관한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 법령을 근거로 한 관련 내용 삭제(제3조제2호, 제11조제3항 및 제4항)
-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발주처 범위 확대(안 제3조제6호)
- 서면심의제도 도입 (안 제6조제3항)
- 사전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9조제4항)

4. 관련근거

-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.1.13일자 조례 제621호로 제정되어,
-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비 30억이상(보상제외)과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법·변경 등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, 시공의 적정성, 설계 및 공법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,
-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과 임명직 10명과, 토질 및 기초, 토목 구조, 도로교통, 수자원, 상하수도, 건축분야 등 총13개 전문분야로 구성된 위촉직 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, 임기는 2년이며, 공사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.
- 금번 본 조례 주요개정내용으로는 2012.4.10일 상위법인 「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으로,
 - 대형공사(추정가격 300억이상)의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(경상북도)의 심의사항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 삭제
 -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발주처 범위 확대
 -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
 - 사전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
- 위와 같이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됨.